

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(905) 제안 설명

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박준희 의원입니다.

이렇게 선배·동료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
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하여 제안
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
말씀을 드립니다.

그럼 『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의
주요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

이 개정조례안은 서울시민디자인위원회의 제1실무위원회
도시디자인 심의대상 시설물에 “횡단보도 쉼터”를 추가하려는
것입니다.

금년 10월 8일 개정·공포된 「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
조례」에 따르면,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
“횡단보도 쉼터”가 추가되어, 횡단보도 쉼터의 공급이 촉진될 것
으로 예상됩니다.

개정조례안은 횡단보도 쉼터에 대한 디자인 심의를 통해 시민의
보도이용 편의 증진, 디자인 향상과 도시경관개선 등에 기여할
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.

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
바라며,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
것을 당부 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